

# 제738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

□ 건 명 : 「도림천1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」

□ 심 사 일 : 2013. 7. 29.

□ 사업개요

- 용역비 : 241백만원

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6개월

- 시설규모 : 도림천1복개 L=2,188m

[부분복개 : 좌측:796.3m, 우측:801.5m, 완전복개:566.2m, 신림5교:24.0m]

□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사내용
<p><b>1. 용역의 필요성</b>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</p> <p>□ 대상 ■ 미대상</p>	<p>○ 본 용역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</p> <p>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</p>
<p><b>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</b></p> <p>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</p> <p>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</p>	<p>○ 용역비 조정 : 241,802천원 → 233,200천원 (감 8,602천원, 용역비 대비 -3.56%)</p> <p>- 현장체제비 : 20,000원 적용</p> <p>- 납품도서 인쇄비 : 2,191천원 → 267천원</p> <p>- 차량운행비(적용제외) : 45대 → 0대</p> <p>- 물기상승률(2014년) 조정 : 5% → 2.2%용</p>
<p><b>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</b></p>	<p>○ 용역수행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</p>
<p><b>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</b></p> <p>- 용역면·중요인의 관리책 적정성</p> <p>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책 적정성</p>	<p>○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할 것</p>